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
----------	----

제출년월일 : 2002. 12. .

제 출 차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사문화된 보철용 차량에 대한 추징단서를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을 명확히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공장 등)에 대한 세제감면기한 연장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 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6조)
-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규정 정비(안 제9조)
- 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공장 등)에 대한 감면적용기한 연장(안 제26조제1항)
- 마.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안 제14조제1항,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세회13400-3690 2001.12.28)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규조문 대비표 : 불임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8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u>유료노인복지시설</u>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유료노인복지시설</u>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u>노인복지시설</u> -----<u>노인복지시설</u> ----- ----- -----</p>
<p>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u> 경감한다.</p>	<p>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p>
<p>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u>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u>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② ~ ③ (생략)</p>	<p>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u>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u> -----<u>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u>-----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지원)①중소기업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시장(시장)을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2010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정보통신망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세무회계과	과장 : 박 동 규	/전화 033)249-2881 /전송 033)249-4081	담당 : 신 광 균	담당자 김 태 영
---------------------------------------	------------	-----------------------------------	------------	-----------

문서번호 세회 13400-3200

시행일자 2002.12.13 (1년)

공개여부 (비공개)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지방세 담당과장

선 결	재무과 장	<i>신광균</i>	지	
접	일자	2002.12.13	시	
수	시간	17:09:56	결	
	번호	6131	개	
처 리 과	재무과		공	
담 당 자	정유진		람	<i>김태영</i>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384(2002.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 의결 등 제반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3. 아울러, 각 시·군에서는 조례개정 추진일정을 12월 16일(월)까지 전언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강원도(강원도 춘천시 자치행정국 세무과) 강원도(강원도 강릉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강원도

"군민과 함께 2010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합시다"

○○도 ○○시 ·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 · 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